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6호서식]

긴 급 임 시 조 치 결 정 서

제 호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.

아동학대행위자	성 명	()		
	주민등록번호	(세)		
	직 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 거			
피해아동등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			
긴급임시조치 내 용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제1호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제2호) 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 []그 밖의 장소(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3호)		
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	일 시			
	장 소			
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				
긴급임시조치 고 지	[□]	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(서명 또는 인)		
	[□]	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:		

년 월 일

사법경찰관

별첨첨부

[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]